

#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 2. 주요내용

- 안산시 도서관의 건립, 운영, 독서문화진흥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 조문 수가 많아 조례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 이해의 편리를 도모
- 도서관의 포괄적인 업무 조항 신설 : 안 제4조 ~ 제6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조항 신설 : 안 제7조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 안 제8조
- 자원봉사자 배치 조항 신설 : 안 제9조
- 복사 및 인쇄 등 저작권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12조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직무 등 조항 개정 : 안 제20조, 제23조
-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시행 조항 신설 : 안 제26조, 제27조

- 독서시설 기반마련 · 행사추진 조항 신설 : 안 제28조, 제29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30조
- 신규 개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안 별표 1
- 자료 복사 및 인쇄 사용료 조정 : 안 별표 2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 도서관의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2016. 7.13.부터 8. 2.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1조에서 경기도 및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근거를 명시한 반면에 본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둘째, 안 제2조는 공공도서관으로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이므로, 총칙에 규정하는 것 보다 “제2장 도서관 설치 · 운영” 의 안 제5조 다음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셋째, 안 제3조제3항의 “사용료”에 대 규정하였는 바, 이는 안 제17조 (사용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의부분에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넷째, “제2장 도서관 설치 · 운영”으로 명시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3항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항으로 “도서관 설치 · 운영” 을 “공공도서관 설치 ·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섯째, 안 제6조(도서관 업무) 규정은 「도서관법」 제28조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본 조례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

여섯째, 안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도서관법」 제8조의 규정과 같이 1호~3호의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

일곱째, 안 제2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제목을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과 맞을 것으로 여겨지며, 제5항은 “위원의 위촉해제,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덟째, 안 제27조제2항은 안 제4조제2항의 시장의 책무와 유사하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아홉째, 안 제28조는 안 제27조제3항에 포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꼭 명시해야 할 경우 안 제27조제3항의 각 호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

하기 위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휴일인 일요일에 이용 수요가 많아 수련관 시설을 개방하는 등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함.(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의 출연금으로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분쟁해결기준 명시(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법률로 정해진 공유 재산 무상사용 내용을 삭제함.(제17조)
- 체력단력장 사용료 삭제, 소극장·체육관 대관료 인상, 부대시설 대여료 추가, 풋살장 사용료 항목을 신설함.(제13조제1항에 따른 별표)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첫째,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수련관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공휴일에는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요일에 수련관 이용 수요가 많음에 따라 동 시설을 일요일에 개방하는 등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임.

둘째, 안 제9조는 수련관 운영경비는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료수입과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수련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인 바,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셋째, 안 제14조에서 기존의 사용료 불반환규정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유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인 바, 이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의 기존 조문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법률로 정해진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 저촉으로 삭제하려는 사안인 바, 본 개정안은 적절다고 여겨지며, 기타 나머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련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만큼, 수련관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도록 관계부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선부청소년, 안산청소년, 일동청소년, 사동디지털)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선부청소년, 안산청소년, 일동청소년, 사동디지털)」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시설명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

구 분	선부청소년 문화의집	안산청소년 문화의집	일동청소년 문화의집	사동디지털 문화의집
개관일	2010. 2. 17.	2000. 1. 29.	2006. 2. 27.	2002. 3. 22.
소재지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단원구 선부광장1호 6 (차량등록사업소 3층)	상록구 호동로 89-16(일동)	상록수 선진로 112 본오2차 상가 1층
연면적	1,155㎡	651.2㎡	509.52㎡	281㎡
현재인력	5 (관장1, 직원4)	3 (관장1, 직원2)	3 (팀장1, 직원2)	3 (팀장1, 직원2)
2016년 예산액	201,725천원	134,813천원	130,510천원	132,678천원

#### 나. 주요 위탁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유지 및 관리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청소년간 교류 및 친선 활동
- 지역연계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배치지원사업 등)
- 그 밖에 건정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므로
-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의 위탁기간이 2016.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장 경험이

요구됨. 이에 본 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 해야 할 것임.

##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수탁자:(사)들꽃청소년세상)의 위탁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시설명 :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 정원 : 15명 내외(25명 미만)
- 운영인력 : 10명(소장 1, 직원 9)

- 운영예산 : 399,531천원(2016년도 기준)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358,731천원(국36%,도10%,시54%)
  -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 40,800천원(도30%,시70%)

#### 나. 주요위탁 내용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의 위탁기간이 2016.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청소년 여자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됨. 이에 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 해야 할 것임.

##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수탁자:(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의 위탁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위탁운영 법인 평가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현황

- 시설명 :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징검다리)
- 수탁자 :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대표:김만경)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35, 501,502호(초지동)
- 운영인력 : 10명(소장 1, 직원 9)
- 쉼터정원 : 19명(9세~24세)
-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 운영예산 : 399,531천원(2016년도 기준)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358,731천원(국36%,도10%,시54%)
  -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 40,800천원(도30%,시70%)
- 사업내용 :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나. 위탁계획

- 시설명 :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징검다리)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35, 501,502호(초지동)
-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
- 위탁사무 :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운영예산 : 399,531천원(2016년도 기준)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358,731천원(국36%,도10%,시54%)
  -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 40,800천원(도30%,시70%)
- 위탁방법 : 현(現)수탁 기관에 재위탁
  - 재위탁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심사· 평가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재위탁, 부적합 시 공개모집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의 위탁기간이 2016.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청소년 남자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됨. 이에 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사업의 연계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현 수탁 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위탁 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청소년 시설 내에 위치하여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인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을 청소년서비스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현황

건 물 연 면 적	94m <sup>2</sup>
운 영 기 관	관산도서관
직 원 현 황	기간제근로자 2명(주중1, 주말1), 자원봉사자 2명
운 영 시 간	10:00 ~ 17: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나. 위탁내용

- 시설명 : 선녀마을작은도서관
- 위치 : 안산시 우목골길 7-15(선부동)
- 위탁기간 : 10년 (2017. 1. 1. ~ 2027. 12. 31.)
- 시설규모 : 연면적 94m<sup>2</sup> (선부청소년문화의집 3층)
- 위탁사무 :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사서1명 26,560천원(시비 100%)  
※ 교육청소년과 예산(선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포함 증액
- 위탁방법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시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시설 포함하여 위탁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소재한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운영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에 위치하여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인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을 청소년서비스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소재한 선녀마을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에는 공감함.

- 다만,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시 본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시설을 포함하여 위탁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출연금 6,350,008천 원)에 대하여 출연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적 요	부서명	출연금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기타	
총 계	4개 사업	6,350,008	1,311,362	2,465,200	2,573,446	
1. 세정 전문화	세 정 과	60,205	0	0	60,205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지역경제과	1,000,000	0	1,000,000	0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교육청소년과	1,839,803	1,249,362	125,000	465,441	
4.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교육청소년과	3,450,000	62,000	1,340,200	2,047,800	

## ○ 세부내용

### ① 세정 전문화

- 가. 지원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
- 나. 필요성 : 지방세에 대한 연구·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과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
- 다. 지원단체 : 한국지방세연구원
- 라. 출연금 : 60,205천원 【(전전년도보통세 결산액) 401,365,337천원 × 0.015%】
- 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60,205	54,263	5,942	
인건비					
사업비					
기 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발전기금	60,205	54,263	5,942	

### ②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 가. 지원근거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나. 필요성 :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다. 지원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라. 출연금 : 1,000,000천원 (2,000,000원 × 500개소)
- 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000,000	1,000,000	0	
인건비	-	0	0	0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산시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신용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li> <li>▪ 사업기간 : 출연일로부터 자금소진시 까지</li> <li>▪ 출연금액 : 10억원</li> <li>▪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액의 10배)</li> <li>▪ 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보증서 발급</li> <li>▪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li> </ul>	1,000,000	1,000,000	0	
기타	-	0	0	0	

### ③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가.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경비)

나. 필요성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원기관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라. 출연금 : 1,839,803천원

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839,803	1,543,000	296,803	
인건비	직원 급여 및 제수당	1,249,362	1,057,180	192,182	
사업비	안산시생활과학교실 및 프로그램운영	125,000	25,000	100,000	
경비	운영경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465,441	460,820	4,621	

### ④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가. 지원근거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필요성 :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

##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다. 지원기관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라. 출연금 : 3,450,000천원

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3,450,000	1,150,000	2,300,000	
인건비	보수 및 퇴직금(직원 2명)	62,000	24,823	37,177	
사업비	소 계	1,340,200	1,085,606	254,594	
	장학사업	1,275,200	994,200	281,000	
	청소년사업	65,000	61,406	3,594	
	연구용역	0	30,000	△30,000	
그 외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	47,800	39,571	8,229	
기본재산 적립	10년간 기본재산 200억 조성을 위한 매년 20억 적립	2,000,000	0	2,000,000	

### 3.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民間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 ※ 공공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 첫째,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sup>4)</sup>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설립 재원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출연근거는 없으나, 금번 회기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운영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출연에 따른 법적근거는 조례안 심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4)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4.20. 개원하여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